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주요 변경사항

동물 사료 첨가물로 에톡시퀸 사용 불가 판단

- 이번 연도 3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에서 ‘유럽식품안전청은 사료 첨가제인 에톡시퀸(Ethoxyquin)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재평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음. 그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에톡시퀸 전반에 대한 데이터 부족과 사료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피-페네티딘(p-phenetidine)의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결과적으로, 첨가제 에톡시퀸이 동물 건강,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되지 않아, 첨가제 에톡시퀸의 기존 승인은 중단되었음.
- 이후 진행된 사료 첨가물로서의 에톡시퀸의 재평가 과정에서 에톡시퀸은 ‘기술적 첨가물(technological additives)’로 분류됨. 기술적 첨가물에는 보존료, 향산화제, 유화제, 안정제, 산도조절제, 목초첨가제 등이 속함. 유럽식품안전청(ESFA)은 이후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을 보고함. (1) 유럽식품안전청은 첨가제에 불순물로 남아 있는 피-페네티딘이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수 및 번식 동물에 대한 첨가제 에톡시퀸의 안전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함. (2) 유럽식품안전청은 우유 생산 동

물의 사료에 에톡시퀸을 파종했을 때 이 동물에 의해 생산되는 우유의 소비자 안전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 따라서 유럽식품안전청은 흡입에 의한 페네티딘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음. (3) 유럽식품안전청은 육지 동물의 먹이에 에톡시퀸이 포함될 경우 육지 생태계(terrestrial compartment)에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함. (4) 더욱이 유럽식품안전청은 첨가제가 육지 동물들에 사용될 경우 해양 생태계(aquatic compartment)에 미칠 위험과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이차 감염의 위험, 나아가 해양 퇴적물에 서식하는 유기체에 미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위와 같은 분석에 의거하여 유럽식품안전청은 ‘항산화제’ 작용집단에 속하는 에톡시퀸이 사료 첨가물로 사용될 때 동물 건강,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되지 않음을 결론 내리고, 에톡시퀸을 사료 첨가제로 승인한 규정을 폐지함. 규정의 폐지는 8월 5일 자에 작성되었으며, 8월 25일부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예정임.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2:206:FULL&from=EN>

2. 시사점

- 올해 초 유럽식품안전청이 제출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 사료에 함유되는 에톡시퀸의 유해성을 인정함에 따라 8월 말부터 에톡시퀸의 함유 여부에 대한 검열이 강화될 것인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서 동물 사료뿐만 아니라 에톡시퀸을 다루는 관련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해 보임.

1. 통관동향 등 이슈

유럽연합, 아зок시스트로빈을 포함한 10가지 살충제 성분의 최대 잔류한계의 기준 수정

- 변경대상 성분 10가지: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 아зок시스트로빈(azoxystrobin), 사이할로포프-부틸(cyhalofop-butyl), 사이목사닐(cymoxanil), 펜헥사미드(fenhexamid), 플라자술푸론(flazasulfuron), 플로라술람(florasulam), 플루록시피르(fluroxypyr), 이프로발리카르브(iprovalicarb) 및 특정 제품의 실티오팜(silthiofam).

2. 변동사항

-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관련한 주의 품목: 아몬드, 브라질 견과류, 캐슈넛, 코코넛, 헤이즐넛/코코넛, 마카다미아,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및 기타 견과류. 그러나 메밀 및 기타 유사 곡물의 경우 잔류 실험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 아зок시스트로빈 관련한 주의 품목: 마타리 상추(lamb's lettuces)/옥수수 샐러드, 에스카롤(escaroles, 꽃상추의 일종)/활엽 꽃상추(broad-leaved endives), 갯류 식물(cress)과 기타 콩나물과 순(other sprouts and shoots), 로마 로켓(roman rocket)/루콜라, 붉은 겨자 및 어린잎 작물(브라시카 종 포함). 그러나 현재 돼지(근육, 지방, 간, 신장, 내장), 소(근육, 지방, 간, 신장, 식용 내장), 양(근육, 지방, 간, 신장, 식용 내장), 염소(근육, 지방, 간, 신장, 식용

내장), 가금류(근육, 지방, 간, 신장, 식용 내장), 우유(소, 양, 염소, 말) 및 새알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최대 잔류한계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품목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사이할로포프-부틸 관련한 주의 품목: 쌀.
- 사이목사닐 관련한 주의 품목: 식용 포도(table grapes), 와인 포도(wine grapes), 상추 및 시금치.
- 펜헥사미드 관련한 주의 품목: 키위 과일(녹색, 빨간색, 노란색). 키위 과일에 대한 잔류 시험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기준척도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유럽식품안전청이 기존의 데이터로 평가를 시행한 결과, 키위 과일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대 잔류한계의 기준(MRL)을 유지하기로 함.
- 플라자솔푸론 관련한 주의 품목: 식용 올리브(table olives) 및 오일 생산용 올리브(olives for oil production).
- 플로라솔람 관련한 주의 품목: 소(근육, 지방, 간, 신장, 가식 내장), 양(근육, 지방, 간, 신장, 가식 내장), 염소(근육, 지방, 간, 신장, 식용 내장) 그리고 우유(소, 양, 염소, 말).
- 플루록시피르 관련한 주의 품목: 사과, 양파, 백리향(thyme). 마늘과 샬롯(shallots, 작은 양파의 일종)은 분석되었으나, 리크(leeks, 큰 부추같이 생긴 채소), 곡물 그리고 꽃과 사탕수수의 허브 주입에 대해서는 추가 위험 관리가 필요함. 또한 돼지(근육, 지방, 간, 신장, 내장), 소(근육, 지방, 간, 신장, 내장), 양(근육, 지방, 간, 신장, 식용 내장), 염소(근육, 지방, 간, 신장, 식용 내장) 및 우유(소, 양, 염소, 말)는 기존의 최대 잔류한계의 기준(MRL)을 유지하기로 함.

- 이프로발리카르브 관련한 주의 품목: 상추, 에스카롤/활엽 꽃상추 및 로마 로켓/루콜라의 작물 대사.
- 실티오팜 관련한 주의 품목: 보리(barley), 호밀(rye), 밀.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2:205:FULL&from=EN>

3. 기타 주의사항 등

- 위의 10가지 성분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은 과실류(FRUITS, FRESH or FROZEN; TREE NUTS), 채소류(VEGETABLES, FRESH or FROZEN), 콩류(PULSES), 지방 종자 및 지방 과실(OILSEEDS AND OIL FRUITS), 곡물류(CEREALS), 차류(TEAS, COFFEE, HERBAL INFUSIONS, COCOA AND CAROBS), 향신료(SPICES), 육류 (PRODUCTS OF ANIMAL ORIGIN -TERRESTRIAL ANIMALS) 등의 품목별로 각각 상이함. 따라서 변경된 구체적인 기준치는 관련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를 참고.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2:205:FULL&from=EN>

- 변경된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로 시행됨. 2023년 2월 25일 이전에 EU 국가 내에서 생산되거나 EU 국가로 수입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변경 이전의 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위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에는 변경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과 적용일로부터 위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됨.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기준월(8월) 보고된 사례 없음